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